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3 선고 2015가단538651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전 문

원 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피 고 1. A

2. B

변론 종결 2016. 10. 20.

판결 선고 2016. 11. 3.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소외 C에게, 피고 A은 별지 목록 기재 제1, 2, 3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1996. 1. 17. 접수 제1062호로 마친 지분전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제4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하고, 피고 B는 위 목록 기재1996. 1. 23. 접수 제638호로 마친 지분전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C은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자신이 소유하였던 모든 부동산을 처인 피고 A과 아들인 피고 B에게 증여하였는바, 이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C의 구상금 채권자인 원고는 채무자인 C을 대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를 청구하는바, 피고들은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미치는 것이므로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를 제기하는 것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2011다49981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76074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어 기판력이 발생되었다할 것인데,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명백히 저촉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과 피고 A 사이의 증여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민철

별지(부동산목록)

1. 경상북도 김천시 [] 전 15367㎡
2. 경상북도 김천시 [] 임야 2077㎡
3. 경상북도 김천시 [] 임야 7934㎡
(이상 []의 각 1/2지분)
4. 충청북도 영동군 [] 임야 49266㎡
([]지분 1/3)